안산시 공고 제2017-1382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23조(부당이득의 징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1.

안 산 시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3조, 민법 제7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17. 10. 11.~2017. 10. 26.(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납부자명	주소	반송사유	환수결정액(원)
서○애 (○애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애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 (고잔동, 안산고잔5차푸르지오)	기타	25,110원
이○근 (행복○가정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 (논현동, 한화에코메트로)	수취인불명	2,463,610원

5. 송달내용

가.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3조, 민법 제74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 통보하오니 2017. 10. 26.(목)까지 납부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 및 지방세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6. 문의사항 :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의료보장담당(☎ 031-481-3027)